SAg. c. 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우/주소/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전화 (02)788-2775 /전송 (02)788-3352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박 수 철 담당자 이 제 봉

문서번호 법사 제259 호
시행일자 1999. 5. 7.

수신 수신처 참조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목 진술인 추천의뢰 협조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인 인권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귀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심사에 참고하고자 진술인 추천을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진술인 선정관련 안내문 1부
2. 인권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계획 1부
3. 인권법안 1부. 끝.

법 제 사 법 위 원 장

수신처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동아일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진술인선정관련 안내문

우리위원회에서 인권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1999년 5월 27일에 개최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귀 기관의 진술인을 선정·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1. 각 대상기관에서는 선정된 진술인의 이름·직책·연령·학력·경력·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등 인적사항을 가급적 빠른 시간내 우리 위원회에 서면통보 요망

2. 진술인으로 선정된 분은 주제별로 작성한 진술요지서(총발표시간 15분내외 발표분량)와 그 내용이 담긴 디스켓을 늦어도 1999. 5. 20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요망(빠른우편 또는 전자우편)

인권법안에관한공청회개최계획(안)

1999. 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Ⅰ. 인권법안(정부제출안) 심사경과

o 1999. 4. 7 정부제출

o 1999. 4. 22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부

- 이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시 박헌기 위원, 조순형 위원 외 많은 위원들이 법안의 주요 사항에 대한 쟁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각종 인권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음.

Ⅱ. 공청회 개최계획

1. 목 적

인권법안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 및 법률안 심사 참고

※ 법적 근거 : 국회법 제64조

2. 안건명

인권법안에 관한 공청회

3. 일 시

1999. 5. 27(木)

4. 장 소

제3회의장(본관 145호실)

5. 주제 및 진술인

가. 주 제

o 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독립성

o 인권위원회의 구성

o 인권위원회의 권한 : 시정명령권 및 강제조사권 부여 문제

나. 진술인 선정

- 정 부 : 법무부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각 1인
- 법 원 : 법원행정처 1인
- 인권단체 :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및 관련분야 교수 각 1인)
- 변 협 : 대한변호사협회(1인), 서울변호사협회(1인)
- 언론계 : 1인

6. 진행방법

o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회의로 진행하되 공개로 함.

o 진술인의 주제발표후 질의 · 답변

o 진술인 주제발표시간 : 총 발표시간 15분내외

o 질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만 하고 방청인의 경우 위원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토록 함.

7.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10:00	개 회
10:00 ~ 10:30	위원장 인사 및 진술인 소개
10:30 ~ 12:00	진 술 인 발 표
12:00 ~ 14:00	정 회(오 찬)
14:00 ~ 15:00	진 술 인 발 표 (계 속)
15:00 ~ 18:00	질 의 · 답 변
18:00	산 회

8. 소요예산

o 추후산정(진술인 사례금, 식비등)

9. 기타사항

가. 진술인

o 관계기관에 진술인선정 의뢰공문 발송

o 진술인은 진술요지서를 '99. 5. 17까지 제출

o 진술인에게는 국회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소정의 사례금 지급

나. 보도 및 촬영

o 공청회 상황을 TV 및 라디오, 신문에서 취재·방영토록 협조요청

o 공보국에 공청회 진행 기록사진 촬영 및 구내 생중계 의뢰

다. 속 기

o 기록편찬국에 속기협조 요청

라. 자료배포

o 진술요지서등 공청회자료 인쇄후 사전배포

마. 방 청

o 공청회장의 시설여건을 감안하여 방청권을 사전에 배부(90석내외)

o 유관기관, 국내기관등에 적절히 할당

바. 공청회 개최 공고문 및 안내문 개최 3일전 공고(정문 및 본청 게시판)